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8
----------	----

제출년월일 : 2015. 9.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폐지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위반소지를 제거하고 관련 법령과의 연관성 확보 및 법 적합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규칙의 폐지와 조례 신설로 인한 근거조문 변경

- 제3조제9호 「평창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를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로 변경

나. 근거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한 삭제

- 제3조제12호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의 삭제
- 제3조제13호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 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의 삭제
- 제3조제14호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의 삭제
- 제3조제19호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의 삭제

- 제3조제22호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평창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교통안전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의 삭제

다.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일시의 변경

- 제4조의 제1항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을 “위원회는 매주 수요일에 개최함을”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 6. 17. ~ 2015. 7. 7.)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대상 아님

3) 성별영향평가 : 대상 아님

4) 부패영향평가 : 개선 권고(반영 완료)

- 조례 제3조제22호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평창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교통안전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조례로 그 구성 등에 관하여 위임한 바 없고, 다른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위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3조제22호 삭제 권고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평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3조제9호 중 “평창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를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19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 목요일”을 “수요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u></p> <p>제3조(결정사항) <u>군정조정위원회</u>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p> <p>1. ~ 8. (생 략)</p> <p>9. <u>평창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의</u>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p> <p>10. · 11. (생 략)</p> <p>12. <u>생활보호법 제16조의</u> 규정에 따른 <u>생활보호위원회에서</u> 처리할 사항</p> <p>13. <u>가정의례에 관한법률 제12조의</u> 규정에 의한 <u>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u> 처리할 사항</p> <p>14. <u>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u>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p> <p>15. ~ 18. (생 략)</p> <p>19. <u>지방재정법 제78조의</u> 규정에 의한 <u>공유재산심의회의에서</u> 처리하여야 할 사항</p> <p>20. · 21. (생 략)</p> <p>22. 「<u>교통안전법</u>」 제17조에 따</p>	<p style="text-align: center;"><u>평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u></p> <p>제3조(결정사항)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u>」 제8조 ----- -----</p> <p>10. · 11.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15. ~ 18.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20. · 21. (현행과 같음)</p> <p><삭 제></p>

른 평창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교통안전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3. (생략)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매주 목
요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
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23. (현행과 같음)

제4조(회의) ① -----
수요일 -----
----. -----

-----.

② ~ ⑦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 성 자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연 락 처	(033)330-2206

관련 조례 및 법령

1. 평창군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 ①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평창군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2.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제2조(설립) 평창군수(평창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동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동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3.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0.>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4.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

②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